

처리기한 1983.06.2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 731-6359 /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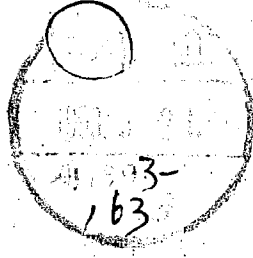
문서번호 재개58551-에

발행일자 93.05.21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영도	
주택 국장	전 결			
재개발과장	김영		법무담당관 (고시심사) 김사필	
사업 2계장	김영		행정 계장 김영	
기안	이	경	일	계획 계장 김영 협조

제목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1. 건설부 고시 제143(84.4.28)호로 구역지정되고, 시 고시 제673호(85.10.7)로 사업계획 결정된 북창구역 제10,11,12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83년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바 가결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고시코저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결정 내용

지구명	구분	대지면적(m ²)	건폐율(%)	용적율(%)	층수	주용도	비고
북창구역 제11지구	기정	686.8	45	340	8	근린생활 시설	
	변경	680.0	43 ~ 47	323 ~ 355	8/5	(업무시설)	
북창구역 제10지구	기정	695.4	71.3	460	6	주차시설	
	변경	694.1	71.4	460.9	6	"	
북창구역 제12지구	기정	777.9	63.7	545	10	업무시설	
	변경	786.0	63.0	539.4	10	"	

첨부 회의록 사본 1부(봉보후 첨부) 및 고시문 1부, 끝

(제2안)

원본대조필

수신 중구 소공동 112-34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 유지재단 이사장 김봉하

제목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정보

변경 고시안과 같이 변경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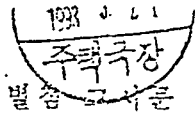
첨부 고시안 사본 1부. 끝.

(1. 8안)

발신 건설부 장관

주소 도시정비과장

제목 도심지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보고



1. 도심지개발사업 북창구역 제 10, 11, 12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안 사본과같이 변경결정 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안 사본 1부. 끝.

(2. 1안)

발신 총부처 장관

주소 관보 게재의뢰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보에 게재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종별 : 고시문

나. 게재건명 : 도심지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고시

다. 게재근거 : 도시개발법 제5조 제6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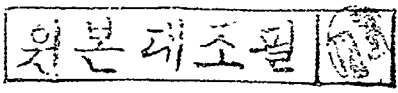
첨부 고시안 사본 2부. 끝.

(3. 1안)

발신 : 총무장장

주소 : 도시정비과장

제목 : 도심지개발사업 변경 결정 통보



1. 도심지개발사업 북창구역 제10, 11, 12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할것.

첨부 고시안 사본 1부. 끝.



국무총리 특 별 시 령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3-163 호

고시번호	제 163 호	제 143 호
담당자	정리부	정리부
날짜	4/30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1. 도심지재개발사업 구역중 건설부 고시 제143호(84.4.28)로 구역 지정되고
 시고시 제673호(85.10.7)로 사업계획 결정된 북창구역 제10,11,12지구의 도심지
 재개발사업 계획(건축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및 중구 도시정비과에 **비밀** 토지소
 유권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 5.

서울특별시 장
다 음

가. 사업명칭 : 북창구역 제10,11,12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중구 소공동 112-34번지, 북창동 12-1번지 일대

가. 사업계획 변경결정 내용

원본 리조필

지구명	구분	대지면적 (㎡)	전폐율 (%)	용적율 (%)	층수	주 용 도	비 고
북창구역 제 11지구	기정	686.8	45	340	8	근린생활 시설	
	변경	680.0	43~47	323 ~ 355	8/5	" (업무시설)	
북창구역 제 10지구	기정	695.4	71.3	460	6	주차시설	
	변경	694.1	71.4	460.9	6	"	
북창구역 제 12지구	기정	777.9	63.7	545	10	업무시설	
	변경	736.0	63.0	539.4	10	"	

변경사유 : 북창구역 10지구,12지구의 효율적인 대지이용및 11지구의 당초
 용도 근린생활 시설중 부속용도로서 일부를 업무시설로 변경.

2001

(781 - 8841)

1991. 5. 27

경조
국의 결정절차 개선

제11조에 의거 입안하고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수립하여서 결정
결정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 개혁의 일환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이행의 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할것.

(1)

의결사항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계획 결정절차 이행으로 시작사항 및 민원해소 지연

(2)

도시계획위원회 개혁시 이미언이 의결된 상정사안은 가결된 시절에서 조력이
필요없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봉보에 관계없이 주권과에서는 결정
절차 이행하고 후후 봉보되는 회의록은 관계서류에 첨부토록 함.

(3)

도시계획의 결정절차 단축으로 중요시책의 조기결행 및 조속한 민원해결르
시책이행에 공헌. 끝.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서	도시계획과	과장	김영환
주최	도시계획과	주최자	김영환
주최일자	91. 5. 27	주최자	김영환
주최장소	도시계획과	주최자	김영환
주최인원	1434	주최자	김영환
주최목적	도시계획	주최자	김영환

과 장	국 장	부시 장	시 장
	결 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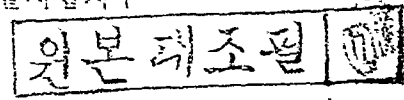
1. 안 건 명 : 북창구역 제 11 지구 도심재개발 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 결정
2. 내용 (이치, 규모, 내용, 기타)
 - 위 치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34, 북창동 12-1
 - 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 내용

지구명	구 분	대지면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층 수	주 용 도 (부속용도)	비 고
북창구역 제11지구	당초	686.8	45	340	8	근린생활시설	
	변경	680.0	48 ~ 47	328 ~ 355	8/5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북창구역 제10지구	당초	695.4	71.3	480	6	주차시설	
	변경	694.1	71.4	460.9	6	주차시설	
북창구역 제12지구	당초	777.9	63.7	545	10	업무시설	
	변경	786.0	63.0	539.4	10	업무시설	

3. 현재의 도시계획 상황

일반상업지역, 주차장경비지구, 집단방목지구, 재개발사업지구

4. 상정 사유



- 사업지구내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11지구의 당초 용도 근린생활시설중 부속용도 토지 일부를 업무시설로 변경토자 함.

5.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등 관련법규 검토사항

없음

6. 기타 (도시재개발법 제 68조에 의한 참석자 인적사항 등)

•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일 시 : '93. 4. 27 - 93. 5. 10

- 게재신문 : 서울신문, 세계일보

• 의견 제출 : 없음

• 건축계획심의: '93. 4. 14. 심의필


기타 : 심의인

원본대조필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 . . . 호 (제 호)	

도시계획시설 (건축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건

원본래조필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199 . . .

- 서울특별시 북창구역 제11지구 도심재개발 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지구명	구분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주용도 (부속용도)	비고
북창구역	당초	636.8	45	340	8	근린생활시설	
제11지구	변경	680.0	43~47	323~355	8/5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북창구역	당초	695.4	71.3	460	6	주차시설	
제10지구	변경	694.1	71.4	460.9	6	주차시설	
북창구역	당초	777.9	63.7	545	10	업무시설	
제12지구	변경	786.0	63.0	539.4	10	업무시설	

2. 제안 이유 (안안 취지)

- 사업지구내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11지구의 당초 용도 근린생활시설중 부속용도로서 일부를 업무시설로 변경코자 함.

3. 기 타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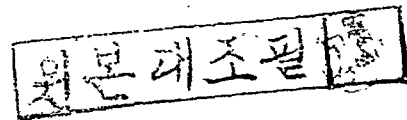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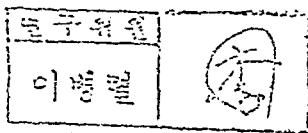
· 공표 및 공람

- 건 명 : 북창구역 제11지구 도심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
- 일 자 및 게재신문 : 93. 4. 27. 서울신문, 세계일보
- 의결 청취 기간 : 93. 4. 27 - 93. 5. 10
- 공 략 장 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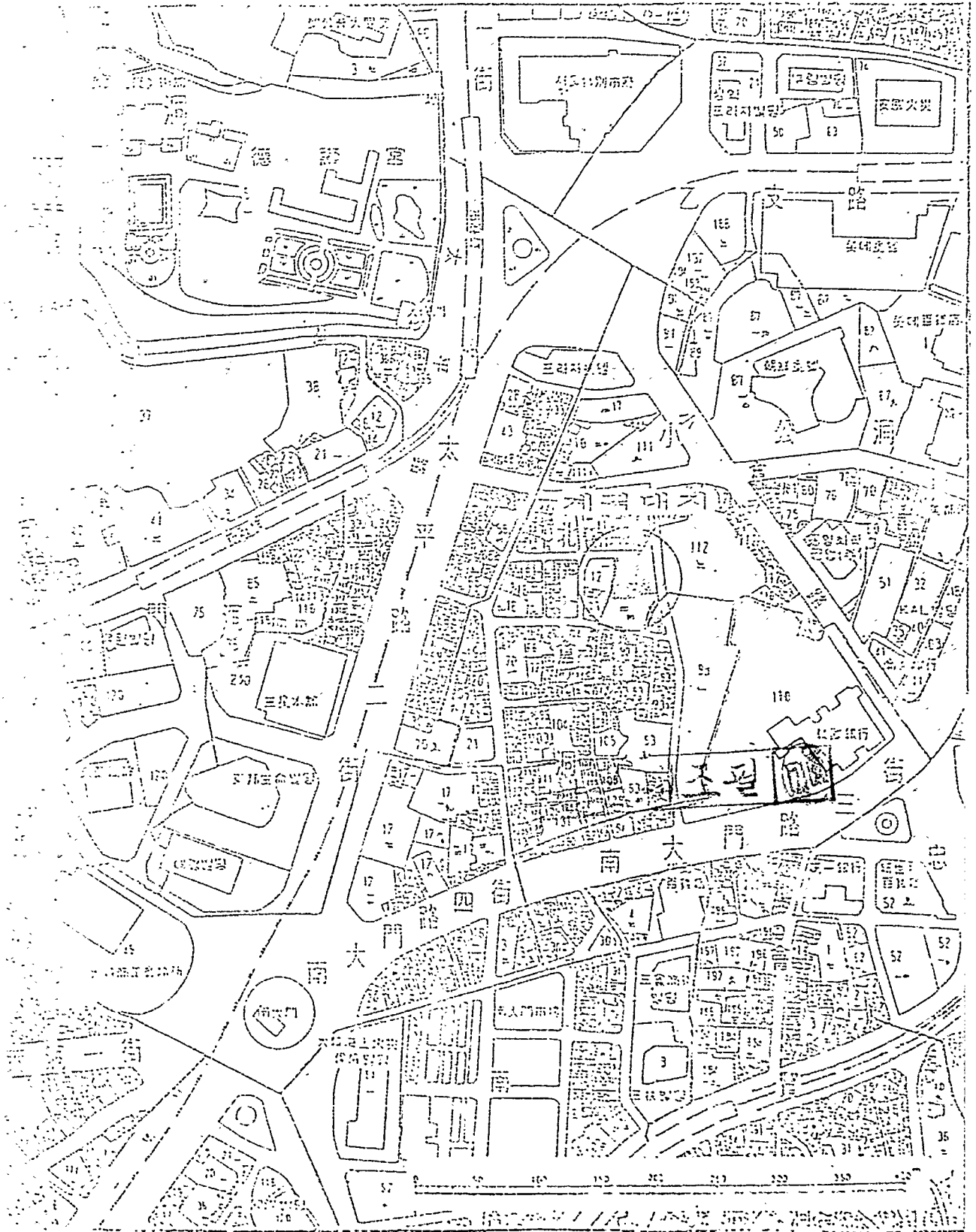
· 의견 제출

5. 도시계획 상임기회관 심사(검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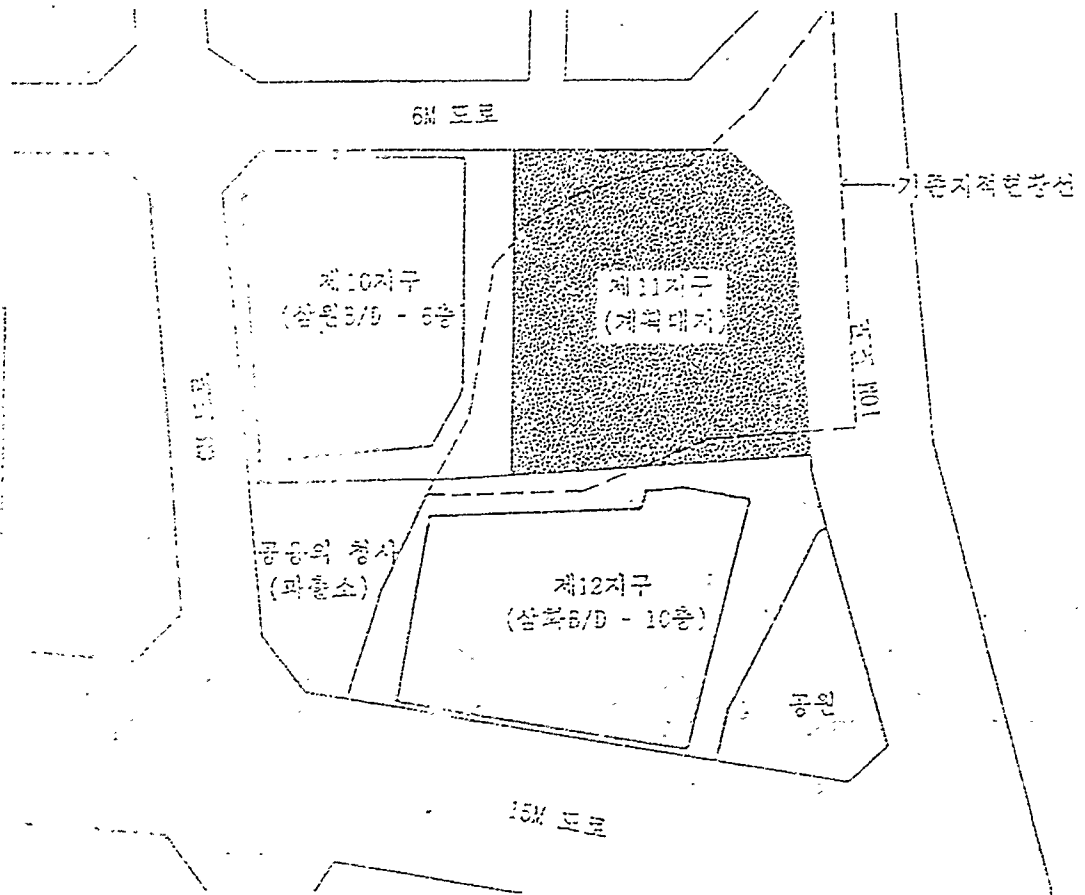
이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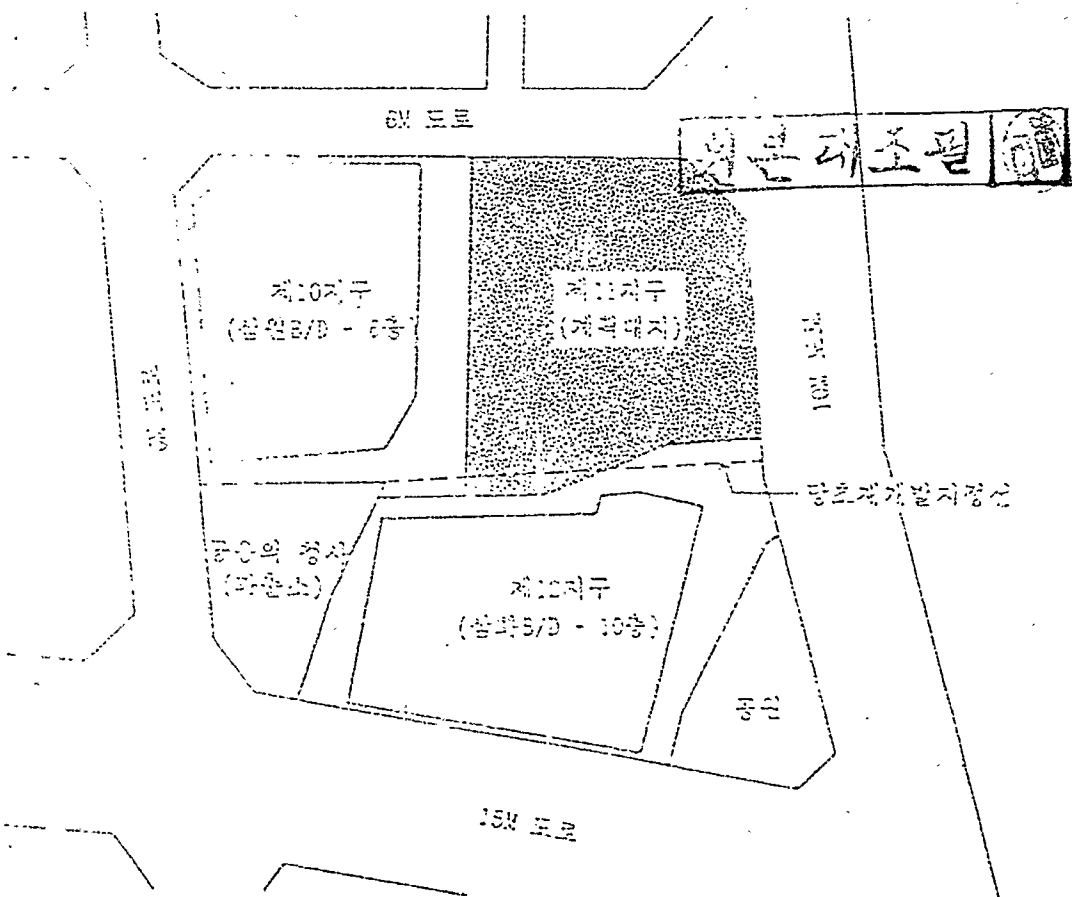
- 첨 부 : 1) 위 치 도
 2) 대 지 현 황
 3) 건 물 배 치 도
 4) 1 층 평 면 도
 5) 기 준 층 평 면 도
 6) 주 변 현 황 사 진
 7) 부 속 도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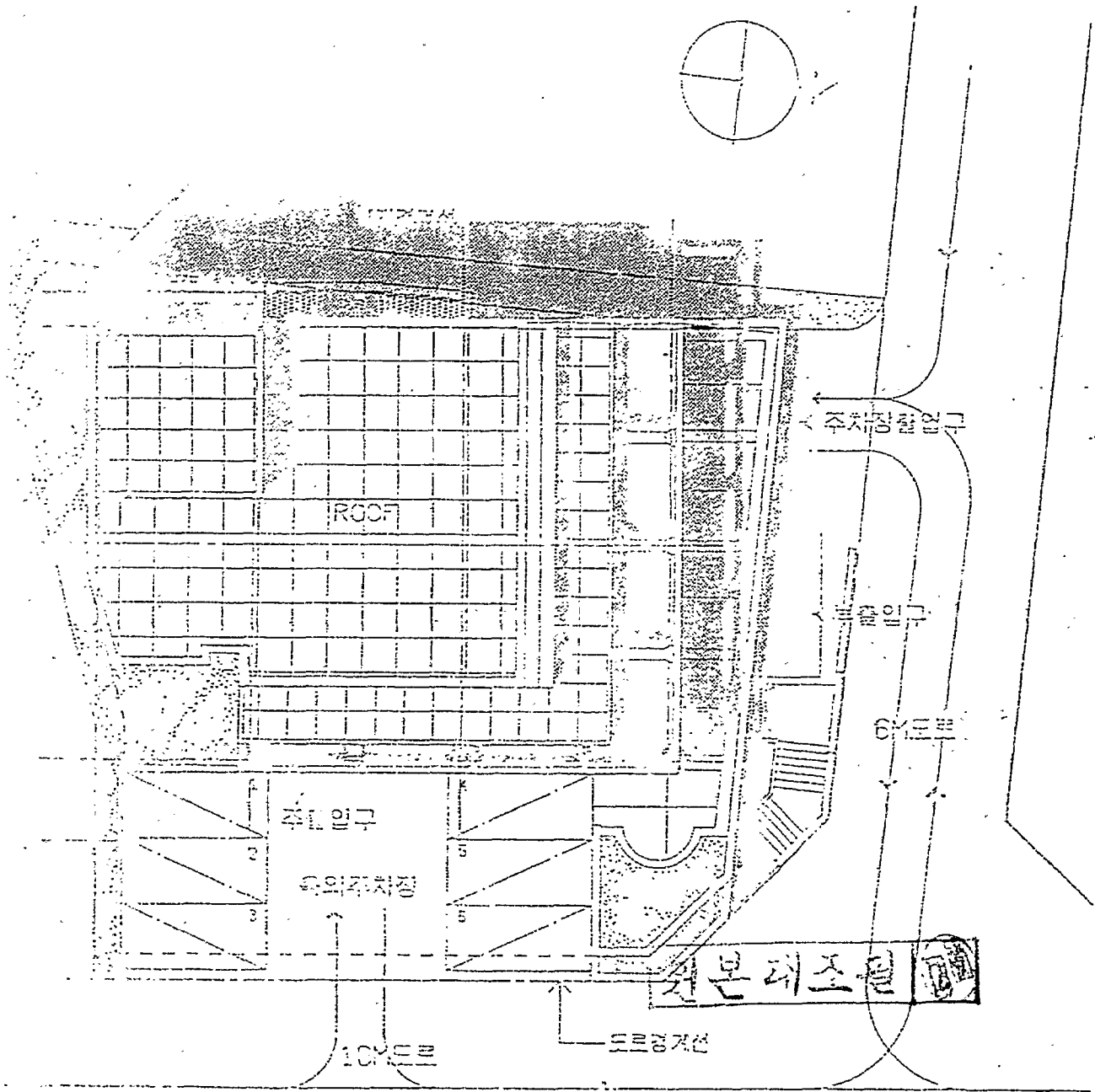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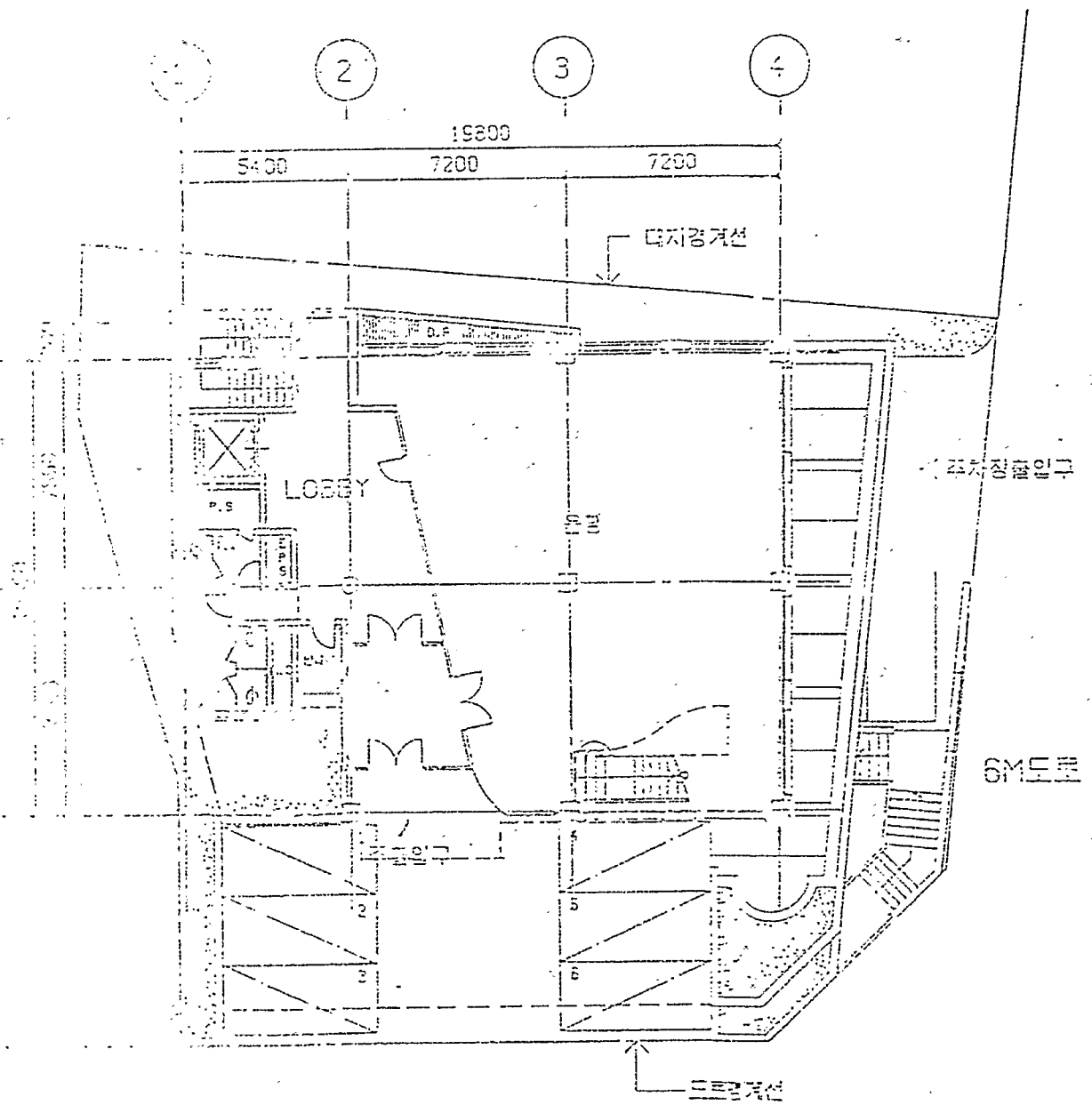
이 기 반의 (관공로사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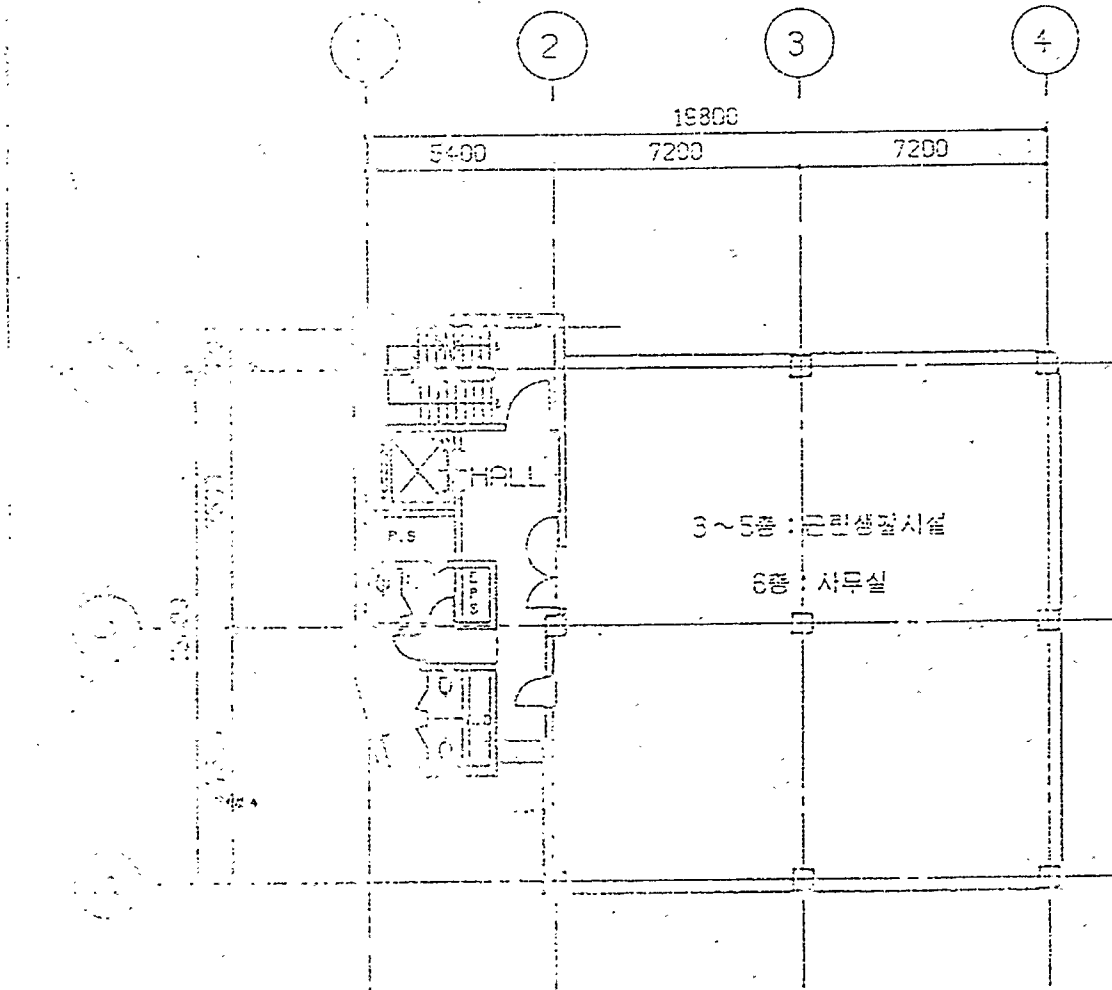
(원거기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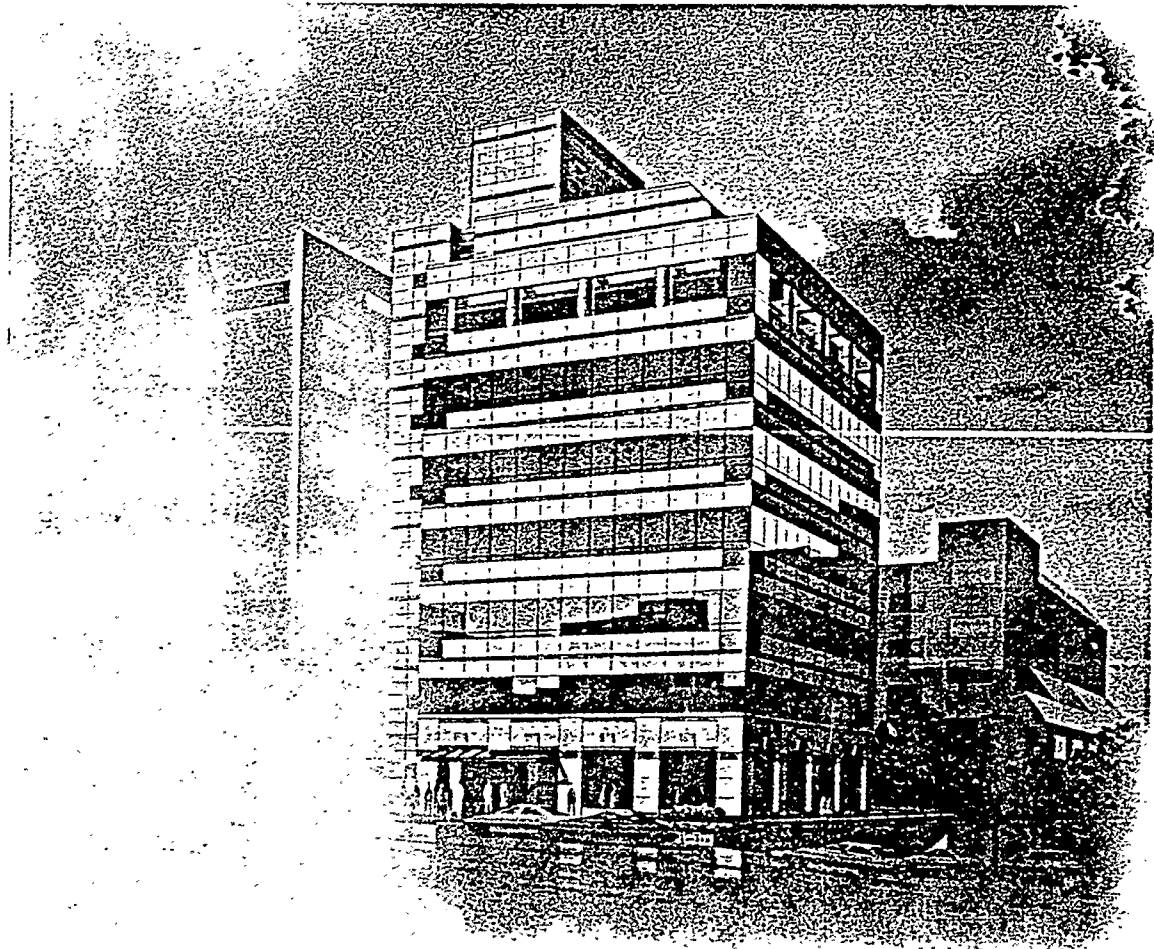
원본대조필




원본 대조필



원본 레조필



원본 레조필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106호

도심지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1. 우리시 도심지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아래 장소에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3년 4월 27일 ~ 1993년 5월 10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731-6359)
 다.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 도면과 각종 199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도심지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변경(안)

지구명	구분	대지면적 (㎡)	건적용면적 (%)	용적률 (%)	층수	주 용 도 (주용용도)
북창구역 제11지구	기정	686.8	45	340	6	근린생활시설
	변경	680.0	43~47	325~355	6/5	(업무시설)
북창구역 제10지구	기정	695.4	71.3	460	6	주차시설
	변경	694.1	71.4	460.9	6	"
북창구역 제12지구	기정	777.9	63.7	545	10	업무시설
	변경	786.0	63.0	539.4	10	"

※ 변경사유 : 북창구역 10지구, 12지구의 효율적인 대지이용 및 11지구의 당초 용도 근린생활시설중 부속용도로서, 일부를 업무시설로 변경.

서울특별시조선회